

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임시) 결과(안)

일시	2017. 3. 6. (월) 19:30 - 21:50	장소	협회 사무실
주관	공동운영위원장 박종연	서기	간사 김진성
회의장 출석	이상민, 박종연, 김진성, 임광섭, 심성보, 김병규, 이준봉, 이철환, 문찬일, 김은아		
사전 의견제출	오동석, 김문규, 홍원기	온라인 출석	
기타 참석			

1. 경과보고

- 2월 25일(토) 제7차 정기총회 운영위원 승인 및 협회장 추대 '이상민' 협회장

2. 심의·의결 안건 설명 및 결정

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(안) : [첨부 1] 참조

수정안의결: 회의장 출석자 전원 찬성

-제4조제2항 中 '단 위원의 회원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자격은 상실된다.' 부분을 삭제

*학생위원 운영위원의 임기도 차기 총회까지 유지하고, 차기 총회에서 정회원 운영위원으로 변경
단, 이를 조문화하기 어렵기에 운영상 원칙으로만 합의함

-제7조 간사의 임기는 6개월로 운영

*조문화하지는 않고 운영상 원칙으로만 합의함

3. 보고·공유 안건 설명 및 논의

① 연회비 납부 안내 예정 (3월 2주 ~)

현재 연회원 61명 대상

②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- (교육청 분과 승인 요청(2.28) / 회원가입 승인)

교육청 분과 이창순, 박형호 등 총 12명

심의위원으로

등 거명, 향후 대상자별 접촉 및 승낙 후 구성 예정

③ 2017년 사업계획 세부논의 및 담당지정 : [첨부 2] 참조

■ 워크숍까지 사업별 계획안 작성

사업명 단위 정/부 담당 추진

-인력운영, 사무실 운영, 재무관리, 운영위원회 워크숍 : 박종연

-총회 준비 총괄, 전국기록인대회 : 전체 (향후 담당자 지정 필요)

-지부 및 분과 설립운영 지원: 오동석(정), 김문규(부), 임광섭

*지부 및 분과 설립운영 지원 업무에 지부분과 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

*지부 및 분과는 기본적으로 해당 단위의 오프행사 및 활동보고 중심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

-회원관리 및 배가 : 박종연, 사무간사

-국내협력 : 이상민(정), 공동운영위원장(부)

- 정책연구 : 심성보(정), 김진성(부), 김은아, 이윤령
- 논평 : 이철환(정), 이윤령(부), 김은아
- 기록학예비학교, 여름학습반 : 김병규(정), 김진선(부)
- 전문교육 : 이상민(정), 김병규(부), 김진선
- 국제교류 : 이상민
- 아키비스트캠프 : 박종연(정), 김문규(부), 김진선, 이준봉
- 카르마 제작 : 김진성(정), 오동석(부)
- 우문현답 자료실 운영, 아키비스트의 눈, 홈페이지 개편 : 문찬일(정), 박종연(부)
- 소식지 발간, 홍보 : 이철환(정), 이준봉(부)
- 한국기록전문가 아카이브 : 김진성

*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최종 결정

■ 사업팀 공모방법 및 일정

- 공동 공모, 9일까지 필요 사업팀별 인원, 문구 정리 및 취합, 10일 공지, 20일까지 모집

■ 협회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변경

- 페이스북 관리자 권한은 운영위원 전원에게 부여하여 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되 협회 명의의 작성은 홍보 담당 운영위원들에게 일임
-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은 일단 박종연, 문찬일이 사용하되 개편 과정에서 재논의

④ 공동운영위원장 관련 협회 사업·업무 구분

■ 사업군 단위 : 협회 운영일반 및 교육, 조직강화 및 소통, 정책대응 및 출판홍보

- 사업군 단위 재조정 의견 : 교육 및 출판홍보 및 소통, 조직강화, 정책대응
- 실제 담당할 수 있는 공동운영위원장 후보자 인선부터 논의하며 결정하자는 의견 제시

⑤ 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인계인수 예정

■ 기록인대회에 대한 협회 참여수준 및 방법 정리

- ‘협회가 단순히 실행지원만 많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’는 의견까지는 모두 동의
- 중장기적 관점 및 방법, 2017년의 참여수준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음
(‘정식 주관단체화 추진 및 기획에 적극적 참여’부터 ‘특정 세션만 준비참가’까지)

⑥ 한국기록학회와 기록정책포럼 공동주최 예정 - (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(3~6월))

■ 기록관리 관련 법의 제·개정을 비롯해서 조직 및 기구, 기능 등 발전방향 모색

- 기록관리법 및 기록관리계 현장의 한계, 정국변환기 등을 고려하여
한국기록학회와의 정책개발, 행사 협력 기조에 대부분 동의

⑦ 국가기록원장 등 간담회 예정 - (기록협회, 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, 국가기록관리위원 등, 3.9경)

■ 참석자 지정 및 국가기록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 논의

- ‘기록의 날’ 국가기념일 제정 계획에 대한 국가기록원 설명 예정
- 협회장이 참석하여 제정시기 및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의견 전달

⑧ 아키비스트 캠프 기획 준비사항

■ 장소 및 일정 / 준비위원회 구성

-7월초 예정, 장소 후보는 서울, 대전, 공주 등 거명

■ 지부 및 분과, 사업팀의 프로그램 내용 준비 필요성 및 가능성

■ 새내 논문상 유지 여부 및 기획

-취지, 방법, 상금수여 여부 등 명확히 정립 필요

-고 이진렬 회원을 기리는 취지를 강조하자면, 상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 필요

⑨ 운영위원회 워크숍 장소 및 일정

■ 서울, 3월 24일(금) 19:30 ~ 25일(토) 11:00

3월 31일(금) ~ 4월 1일(토)로 변경 추진,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서촌

⑩ 운영위원회 소통 및 자료공유 방안

■ 메신저, 구글 드라이브의 적극 사용가능 여부 확인

-HWP 사용을 자제하고 구글 문서 등 오픈 오피스 사용 지향 (기록 생산시 협업 활성화)

-확정된 버전은 PDF로 변환, 저장

4. 기타 안건 논의

-협회비 자율인상 관련 캠페인 진행, 홍보 필요

-공동운영위원장 호선 완료 후 협회장과 같이 홈페이지에 메시지 게시 필요

-(어떤 결론이든) 탄핵 선고 직후 협회 논평 발표 필요(1시간 이내 언론 배포 목표)

-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워크숍에서 진행 예정

운영위원회 운영 규정(현행)

2013년 9월 9일 제정

2014년 4월 14일 개정

2016년 1월 18일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정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부 및 분과의 대표는 해당 지부 및 분과의 대표로 선출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016.1.18. 개정) ② 지부 및 분과 대표가 공석일 경우, 그 운영간사에게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 (2016.1.18. 개정)

제3조(위원의 임기) ① 지부 및 분과를 대표하는 위원 임기는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 ② 협회장 및 사무처장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선출 또는 지명됨으로써 시작되며, 새로운 협회장 및 사무처장이 선출 또는 지명됨으로써 인계된다. ③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협회장 재임기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②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의결로 해제한다.

제5조(위원회 운영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간사 1인을 두되, 운영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또는 서면심의서 제출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회의 진행 중에 새로운 안건이 제기되어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 작성 및 관리) 운영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협회 사무처에서 관리한다.

제8조(지원부서) 위원회의 지원부서는 협회 사무처 사무국으로 한다.

제9조(기타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며,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운영위원회 운영 규정(개정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정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부와 분과의 대표, 정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,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특정 지부 및 분과 대표가 공석일 경우, 해당 간사에게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
③ 선출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, 그 자격은 승계되지 않으며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3조(위원의 선출) ①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 15일전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총회 이전에 공개 한다. ② 운영위원 지원자의 운영위원 승인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지부 및 분과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 ②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정관 제24조제2항에 따른다. 단 위원의 회원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자격은 상실된다. ③ 위원의 임기 및 결위와 관련된 사항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.

제5조(위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위원은 협회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.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③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의결로 해제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관 제25조에 따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정관 제20조 제2항, 제3항,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간사)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,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한다.

제8조(회의기록의 작성 및 관리) ① 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고 회람하여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는다. ② 협회 사무국은 확인된 회의기록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공개한다.

제9조(지원부서) 위원회의 지원부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한다.

제10조(기타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며,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 위원의 자격상실- 위원의 신분이 준회원, 신분의 변동

1. 2017년 사업계획

사업군	사업명	설명
운영일반	인력운영	○ 목적 : 협회 행정업무 지원 및 집행보조 ○ 내용 : 협회 행정업무 집행보조 역할로 상근직 채용 ○ 일정 : 2017년 3월 ~ 4월 ○ 예산 : 상근직 인건비 등 24,000,000원 ○ 기타 : 4대보험 및 상여금 포함
	사무실 운영	○ 목적 : 협회 회의장소, 행정업무 처리, 물품보관, 회의비 등 ○ 내용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길 35(서계동) 203호 ○ 일정 : 2017.3. ~ 2018.2. ○ 예산 : 11,500,000원 ○ 기타 : 사무실 이전 및 축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논의 후 회원 공지
	재무 관리	○ 목적 : 수입(회비 납입 등) 및 지출 관리 ○ 내용 : 회원(정, 학생, 후원회원) 납부 안내 및 지출 내역 처리 ○ 일정 : 상시(상반기 회비 납부 안내 - 연회비, 학생회비 / 후원회원 연장의사 확인 등) ○ 예산 : - ○ 기타 :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상시 공개
	운영위원회 워크숍	○ 목적 : 운영위원회의 업무역량 강화 및 소통을 위한 워크숍 ○ 내용 : 3월 중 1박 2일로 진행하며 전체회의를 대체 ○ 일정 : 3월 중 ○ 예산 : 500,000원 ○ 기타 : 숙박비 및 식사비용 등
	총회 준비 총괄	○ 목적 : 협회 활동 보고 및 사업, 예산의 승인 ○ 내용 : 2018년 1월 (또는 2월) 제8차 정기총회 준비 ○ 일정 : 2018년 1월 (또는 2월) ○ 예산 : 1,000,000원 ○ 기타 : 결산 및 사업계획 등 준비, 회원이 함께하는 총회 만들기 추진
조직강화	지부 및 분과 설립·운영 지원	○ 목적 : 지부 및 분과의 활성화, 신규지부 및 분과추진 ○ 내용 : 지부 및 분과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보조와 공동연계 사업 등의 개발 ○ 일정 : 상시 ○ 예산 : 1,500,000원 ○ 기타 : 2017년 2개 지부와 분과 출범 추진
	회원관리 및 배가	○ 목적 - 신규회원 가입확대를 통한 협회의 설립목적 및 운영기반 마련

		- 후원회원 확충을 통한 협회 재정 확대 ○ 내용 -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연계활동 모색 - 기존 회원의 회원정보 갱신 및 참여 확대 ○ 일정 : 상시 ○ 예산 : 타 사업과 연계하여 반영 ○ 기타 : 운영위원회 전체가 적극 참여
정책대응	국내협력	○ 목적 : 기록관리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협력 수행 ○ 내용 : 국내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또는 공동활동에 대한 협의 ○ 일정 : 상시 ○ 예산 : - ○ 기타 : 2017년 기록관리 협력 담당
	정책연구	○ 목적 : 기록관리분야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○ 내용 : 기록관리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팀의 구성 활동 ○ 일정 : 상시 ○ 예산 : 1,000,000원 ○ 기타 : 국내협력 분야와 연계하여 사업 진행
	논평	○ 목적 : 기록관리 현안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 및 협회의 공식입장 정리 ○ 내용 :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한 상시 정책분석 등 모니터링 ○ 일정 : 상시 ○ 예산 : - ○ 기타 : 국내협력, 정책연구와 함께 진행
교육	기록학 예비학교	○ 목적 : 기록학 신입생(대학원, 교육원) 대상의 기록관리 현황 및 전문가 사명 교육 ○ 내용 :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부족했던 교육을 진행하며, 협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○ 일정 : 2018년 2월 중 ○ 예산 : 1,000,000원 ○ 기타 : 강사료, 대관료 등
	여름학습반	○ 목적 : 예비 기록전문가 대상의 논문 작성법 및 현장정보 공동학습 ○ 내용 :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실무이론과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 ○ 일정 : 2017년 6~7월 (4주 코스 + 1) ○ 예산 : 1,500,000원 ○ 기타 : 강사료, 대관료, 견학비용 등
	전문교육	○ 목적 : 회원 및 기록관리전문가에 대한 기록관리 재교육 ○ 내용 - 기록관리에 관한 관심주제 및 최근 이슈에 관한 교육 실시

		-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 ○ 일정 : 2017년 5월, 11월 ○ 예산 : 1,500,000원 ○ 기타 :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수요조사 선행 필요
소통	국제협력	○ 목적 : 기록관리 분야의 국제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협력 수행 ○ 내용 :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또는 공동활동에 대한 협의 ○ 일정 : 상시 ○ 예산 : 700,000원 ○ 기타 : 국제회비 납부 등(ICA 등)
	아키비스트캠프	○ 목적 : 협회 핵심활동으로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○ 내용 : 제5회 아키비스트 캠프를 통해 새로운 소통체계의 구성 및 기록관리분야 트렌드를 선도 ○ 일정 : 2017년 7월 첫 주 ○ 예산 : 12,000,000원 ○ 기타 : 참가비 및 프로그램 세부 검토, 3월 내 기획(안) 확정, 4월~5월 세부프로그램 확정 및 섭외, 지속 홍보 방안 검토
	전국기록인대회	○ 목적 : 기록관리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○ 내용 :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기록관리 학술대회 ○ 일정 : 2017년 10월 ○ 예산 : 300,000원 ○ 기타 : 세션 참가비, 주관 여부는 추후 재논의
	카르마 제작	○ 목적 : - 회원들의 문제의식 및 주장, 현장의 경험 및 성과 공유 - 협회 활동 등에 관한 글 정리 및 공유 ○ 내용 : - 회원기고, 현장보고, 협회활동 등으로 구성 - 온-오프라인으로 발간 ○ 일정 : 2017년 7월 또는 12월 ○ 예산 : 5,000,000원 ○ 기타 : 연 1회 발행을 추진하며, 상반기에는 온라인 발행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발행 검토, 원고료 제공 검토
	‘우문현답’ 자료실 운영	○ 목적 : 기록관리 현장의 실무경험을 공유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 ○ 내용 : - 제목 : 기록관리 ‘우’ 리들의 ‘문’ 제, ‘현’ 장에서 ‘답’ 을 찾자! - 네이버 카페를 이용 - 정회원 및 후원회원만 이용 - 각 실무별 게시판 운영 -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실무자료 게시자 필요

		○ 일정 : ~ 2017.3. : 카페 게시판 및 디자인 ~ 2017.5. : 적극적 게시자 모집 및 카페 오픈 ~ 2017.12. : 운영 ○ 예산 :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하여 집행 ○ 기타 :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하여 진행
	아키비스트의 눈	○ 목적 : 기록관리 현안과 기록인 일상에 대한 회원 자유기고 활성화 ○ 내용 : 기존 아키비스트 눈에 대한 기고 활성화 ○ 일정 : 상시 ○ 예산 : 없음 ○ 기타 :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하여 진행
출판홍보	홈페이지 개편	○ 목적 : 접근과 소통, 정보 획득이 가능한 협회 홈페이지의 구성 ○ 내용 : 협회 홈페이지 디자인 및 게시판 기능의 업데이트 ○ 일정 : 2017년 3월 ~ 5월 ○ 예산 : 2,000,000원 ○ 기타 :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범위에서 개편 진행
	소식지 발간	○ 목적 : 회원, 협회, 기록관리 분야의 활동 및 동향 공유 ○ 내용 : - 웹진 형태로 운영 - 기록관리 분야 행사, 단체의 동향, 회원 의견 및 동정 - 기록관 소개 등 ○ 일정 : 월 1회 또는 연 4회 ○ 예산 : - ○ 기타 : 기존 로그인의 활성화 또는 새로운 소식지의 창간
	홍보	○ 목적 : 협회 홍보용 자료(리플렛 등) 제작을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○ 내용 : 홍보용 자료 제작을 통한 회원 가입 유치 등에 활용 ○ 일정 : 3월 ~ 6월 ○ 예산 : 1,000,000원 ○ 기타 : 회원가입 안내문 및 협회 홍보자료 제작 등
한국기록전문가 아카이브	한국기록전문가 아카이브	○ 목적 : 기록전문가 개인,집단의 기록 장기보존활용 ○ 내용 : 사업기반 구축/ 고 이진렬 선생 추모자료집 발간 ○ 일정 : 상시 ○ 예산 : 1,000,000원 ○ 기타 : 예산 반영 등을 위한 별도의 모금도 검토

2. 2017년 예산

사업명	지출		수입
	내용	금액	
일반회비	월회비, 연회비	-	40,000,000
후원회비	후원회원	-	8,000,000
후원금	각종사업 후원금	-	7,000,000
사무실운영	임대료, 공과금, 회의 등	11,000,000	-
인력운영	4대 보험 포함	24,000,000	-
워크숍	운영위원회 전체워크숍	500,000	-
총회	총회 준비 총괄 등	1,000,000	-
지부 및 분과 설립·운영	지부활동지원금 등	1,500,000	-
국내외 협력	ICA, ESTICA, 기록인대회	1,000,000	
정책연구	회의, 자료집 등	1,000,000	-
예비학교	대관, 강사료, 자료집 등	1,000,000	1,000,000
여름학습반	대관, 강사료, 자료집 등	1,500,000	1,500,000
아키비스트캠프	대관, 숙박, 자료집 등	12,000,000	7,000,000
전문교육	대관, 강사료, 다과 등	1,500,000	1,500,000
KARMA 6, 7호	출판비, 배송비 등	5,000,000	
홍보물 제작	인쇄비 등	1,000,000	
홈페이지 개편	회의비, 작업비 등	2,000,000	
한국기록전문가 아카이브	한국기록전문가 아카이브	1,000,000	
예비비	예비비 적립	1,000,000	
소 계		66,000,000	66,000,000